



제418회국회(임시회)
제7차 정무위원회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

〈금융정보분석원 조치 내용의 외부 공개 등〉

■ 백혜련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2608호)

2024. 11.

정 무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최병권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: 금융정보분석원 조치 내용의 외부 공개 등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백혜련의원 등 10인
2. 제 안 일 : 2024. 8. 7.
3. 회 부 일 : 2024. 8. 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한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고 그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,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.

최근 가상자산사업자가 운영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, 거래소 이용자들이 거래소의 운영과정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하고, 투명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거래 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6항, 제15조제10항 신설).

Ⅲ. 검토의견: 금융정보분석원 조치 내용의 외부 공개 등

□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 및 조치를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그 검사결과 및 조치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,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조치의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6항 후단 및 제15조제10항 신설).

현행	개정안
제15조(금융회사등의 감독·검사 등) ① ~ ⑤ (생략)	제15조(금융회사등의 감독·검사 등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⑦ ~ ⑨ (생략) <신설>	⑦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,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.

□ 현행법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, 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(법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, 제5조의2, 제5조의3, 제5조의4 및 제8조),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위와 같은 업무를 감독하며, 감독에 필요한 명령·지시를 할 수 있고,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(법 제15조제1항).¹⁾

1)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금융회사등의 감독·검사 등)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, 제5조의2, 제5조의3, 제5조의4 또는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를 감독하고, 감독에 필요한 명령 또는 지시를 할 수 있으며, 그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금융회사등의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) 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각 호 생략)

제4조의2(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) ① 금융회사등은 5천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현금(외국통화는 제외한다)이나 현금과 비슷한 기능의 지급수단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“현금등”이라 한다)을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(領收)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(단서 및 각 호 생략)

②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제1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조(금융회사등의 조치 등)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를 원활하게 하고 금융회사등을 통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(각 호 생략)

제5조의2(금융회사등의 고객 확인의무) ①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주의(注意)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. (각 호 생략)

④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,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여야 한다. (각 호 생략)

제5조의3(전신송금 시 정보제공) ① 금융회사등은 송금인이 전신송금(電信送金: 송금인의 계좌보유 여부를 불문하고 금융회사등을 이용하여 국내외의 다른 금융회사등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)의 방법으로 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을 송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송금인 및 수취인에 관한 정보를 송금받는 금융회사등(이하 “수취 금융회사”라 한다)에 제공하여야 한다. (각 호 생략)

제5조의4(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) ① 금융회사등은 제4조, 제4조의2,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의무이행(이하 이 조에서 “의무이행”이라 한다)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자료 및 정보를 금융거래등의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 (각 호 생략)

제8조(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) 가상자산사업자는 제4조제1항 및 제4조의2에 따른 보고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- 또한,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·지시 위반 사실을 발견한 경우 금융회사등에 대한 시정명령·경고·주의 등의 조치 또는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게 대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(법 제15조제2항 및 제3항).²⁾
- 한편, 금융정보분석원의 직접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의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·조치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등 11개의 기관에 위탁하고(법 제15조제6항),³⁾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 결과(검사에

2)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금융회사등의 감독·검사 등) ②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.

1. 위반 행위의 시정명령
2. 기관경고
3. 기관주의

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 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게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 줄 것을 해당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

1. 임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
 - 가. 해임권고
 - 나.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
 - 다. 문책경고
 - 라. 주의적 경고
 - 마. 주의
2. 직원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
 - 가. 면직
 - 나. 6개월 이내의 정직
 - 다. 감봉
 - 라. 견책
 - 마. 주의

3)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금융회사등의 감독·검사 등)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금융감독원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
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(감독·검사 등) ② 법 제15조제6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”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·행정안전부장관·산업통상자원부장관·중소벤처기업부장관·관세청장·제주특별자치도지사·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·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·산림조합중앙회장·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말한다.

따른 조치결과 포함)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(법 시행령 제15조제7항).⁴⁾

<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·조치권한 수탁기관 현황>

과학기술정보통신부(체신관서), 행정안전부(새마을금고중앙회), 중소벤처기업부(벤처투자회사, 벤처투자조합), 관세청(환전영업자), 금융감독원(은행, 보험, 증권 등의 금융회사등), 농협·수협·신협·산림·새마을금고 각 중앙회, 제주특별자치도청(제주 소재 카지노사업자)			
--	--	--	--

<현행법상 제재권 위탁 현황>

구분		제재 종류	FIU	수탁기관
기관제재		신고말소, 영업정지요구권, 시정명령	○	
		기관경고, 기관주의		○
인적 제재	임원	해임권고, 직무정지	○	
		문책경고, 주의적 경고, 주의		○
	직원	면직, 정직, 감봉, 견책, 주의		○
금전제재		과태료	○	

(자료: 금융정보분석원)

□ 그런데, 금융정보분석원과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·조치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,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한 금융회사등의 법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조치를 국민이 알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.

□ 이에 개정안은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고 검사결과와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으로, 개정안의 내용별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음.

4)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(감독·검사 등) ⑦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(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)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□ 먼저,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위탁을 받은 수탁기관이 금융회사등에 대한
검사·조치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규정(안
제15조제6항 후단)은 현행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
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제7항⁵⁾ 및 「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
한 검사 및 제재규정(금융정보분석원고시)」 제12조제1항⁶⁾에서 규정하
고 있는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하려는 것으로, 법리상 별다른 문제는
없는 것으로 보임.

□ 다음으로, 금융정보분석원장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·지시 위
반에 대한 조치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(안 제15조제
10항)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
와 관련한 금융회사등의 법 위반행위와 그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
을 공개하여 금융회사등이 유사한 법 위반행위를 하여 제재받는 사례
를 방지하려는 취지로,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
하고 검사결과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
입법조치로 보임.

5)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(감독·검사 등) ⑦ 수탁기관의 장
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(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)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
한다.

6) 「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」 제12조(검사결과의 통보) ① 검사수탁기관의
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
통보하여야 한다.

②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시스템 리스크 초래, 금융회사등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, 다수 금융 소비자
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통보와는 별도로 검사 종료 후 지체 없이 그
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장에 대한 검사결과 통보는 금융회사등에 검사결과를 통보하기 전에
행하여야 한다.

- 현행 「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」에서도 금융정보분석원 또는 검사수탁기관이 조치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⁷⁾하고 있으나, 제재적 성격의 공표⁸⁾의 경우 개인의 인격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.
- 다만, 개정안은 외부공개 대상을 “제2항,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조치의 주요 내용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조치 내용의 외부공개를 통해 검사 결과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외부공개 범위내 영업정지 제재조치를 규정하고 있는 법 제15조제4항⁹⁾을 포함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문 의 처
02)6788-5111

- 7) 「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」 제28조의2(검사결과 조치내용의 공개)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 또는 그 임직원에게 검사결과 조치내용(제1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)을 최종 통보한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주요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. 다만 관련 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거나 금융회사등의 영업상 비밀 등 제재대상자 또는 제3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8) 제재적 성격의 공표는 의무위반에 대한 성명·위반사실 등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훼손을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성격을 가짐.
- 9)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금융회사등의 감독·검사 등)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등의 영업에 관한 행정제처분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.
1.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
 2. 제2항제2호에 따른 기관경고를 3회 이상 받은 경우
 3.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